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벽산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BYUCKSAN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무기섬유제품 제조 및 가공판매업
- 2) 시멘트 제품 제조 및 가공판매업
- 3) 규산칼슘제품 제조 및 가공판매업
- 4) 유리섬유제품 제조 및 가공판매업
- 5) 경성발포 폴리스틸렌제품 제조 및 가공판매업
- 6) 미네랄울제품 제조 및 가공판매업
- 7) 수출입업
- 8) 의장공사업
- 9)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10) 유통업
- 11) 석고제품 제조 및 가공판매업
- 12) 각종도료 및 인쇄잉크의 제조 및 가공판매업
- 13) 주택건설 및 분양매매업
- 14) 창고보관 임대업
- 15) 각종 건축자재 제조 및 가공판매업
- 16) 인터넷 사업
- 17) 태양열관련사업
- 18) 실내환기관련사업
- 19) 전각호에 관련된 서비스업
- 20) 전각호에 부수되는 사업 일체

제 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공장, 지점, 영업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yucksan.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억주로 한다.

제 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 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7,140,000주로 한다.

②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5%이상 15%이내 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

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기간중 소정의 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 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

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성장발전, 전략적 제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제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 까지 포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 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 9조의2 (일반공모증자) : 삭제

제 9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1. 삭제(2009.03.20)

2. 삭제(2009.03.20)

3. 삭제(2009.03.20)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만료일을 당해 임?직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월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 또는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삭제(2021.03.29)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9조의4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0조 (명의개서 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 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의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 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3조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 공모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삭제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성장발전, 전략적 채휴,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제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삭제(2009.03.20)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서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삭제(2021.03.29.)

제1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 공모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삭제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성장발전, 전략적 채휴,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제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삭제(2009.03.20)

②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삭제(2021.03.29.)

제14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

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5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16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4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6명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는 법 제 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다.
-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

나, 이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한다.

제3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 1명,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3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하여 임시총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35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7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의 결의에 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③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 월보수액에 근속년수의 2배를 승하여 산출하되 임원으로 선임된 후 10년 초과시 3배, 20년 초과시 4배, 30년 초과시 5배를 승한다.

제40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41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2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이 회사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3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 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3조의 2 (주식의 소각) : 삭제

제44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7 장 보 칙

제46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47조 (내규)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업무상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1.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 제 29조 2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